

2016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2016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 10.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 11.3.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2. 편성사유

-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2016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경예산안 규모

가. 개요

- 세입 : 기정예산 479억 대비 16억원 증액
- 세출 : 기정예산 886억 대비 32억원 증액

< 세입예산(안)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회 계	예 산 액			증감비율(%)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교통사업특별회계	49,499,000	47,899,000	1,600,000	3.3

<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회 계	예 산 액			증감비율(%)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계	91,799,000	88,599,000	3,200,000	3.6
일 반 회 계	42,300,000	40,700,000	1,600,000	3.9
교통사업특별회계	49,499,000	47,899,000	1,600,000	3.3

나. 세부내역

- '16년도 세입예산은 478억 9천9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예정) 447억 8천8백만원에 비해 약 31억 1천1백만원의 결손액 발생이 예상됨.

<2016년 세입결산액(예정)>

(단위 : 천원)

예산과목	'16 세입예산	세입수납액	결손액	비 고 (세입수납액 내역)
교통사업특별회계	47,899,000	44,787,713	3,111,287	
공유재산임대료	10,000	6,500	3,500	. 남산 구청사 1층 카페임대료
기타사업수입	6,381,000	3,490,000	2,891,000	. 협찬 및 광고방송금
그외수입	8,000	91,213	-83,213	. 불용품매각 85,861 . 구청사 주차장 이용료 5,352
지난연도수입	800,000	500,000	300,000	. 지난년도 협찬 및 광고방송금 미수납액 징수
기타회계전입금	40,700,000	40,700,000	0	. 일반회계전입금

결손액을 채우기 위해 세입예산(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원을 추가하고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의 균형을 위해 세출예산(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예비비를 16억원(전액 불용예정)

추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내부거래 지출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16억원 증가한 것임.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내부거래지출(교통방송계정전출금)에도 16억원을 추가하여 교통방송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체하도록 함.

4. 검토의견

- 2016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94억 9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78억 9천9백만원의 3.3%인 16억원이 증액된 것임.
-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17억 9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85억 9천9백만원의 3.6%인 32억원이 증액된 것임.
- 교통방송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징수액과 세출집행액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협찬·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결손으로 부족분을 지원할 필요가 생김.
 - 2016년에 광고협찬수입에서 31억 9천1백만원 미수납액 발생이 예상되나, 청사이전 시 불용품 매각을 통해 8천5백만원 수입이 발생하여 약 31억원 부족분 발생이 예상됨.
 - 예비비 5억 7천만원과 그 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9억 3천만원을 절감하는 등 약 15억원의 절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청사이전과 프로그램 개편으로 부족분(31억원) 전액의 예산절감은 어려운 상황임

- 교통방송은 “세입예산의 신뢰성 결여 및 수익사업의 수입저조”를 여러차례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으며

해마다 이러한 세입결손액을 방송제작비의 절감,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경상경비 예산의 지출 자제 등의 예산절감계획을 세워 세출규모를 줄여왔음.

다만 2016년에는 청사 이전과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예산집행액을 대폭 절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 예산과에서는 세입결손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16억원 반영하였고, 예산구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출예산에 1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비로 반영할 수 없어 예비비로 반영함. 또한 예비비로 반영된 후에는 집행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이는 마땅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서울시는 2011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 과다계상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양입제출의 원리(수입을 미리 계산한 다음 지출계획을 맞추는 원칙), 수지균형의 원칙 등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실제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통방송은 서울시에 의견을 피력하여 향후 현실성있는 세입추계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